

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의안
번호

ㄴ

제출년월일 1995. 3. 25

제 출 자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(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,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1) 심의사항(안제2조) :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사·조정 한다.
- 2) 위원회구성(안제3조) : 위원장(구청장)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.
 - 위원장 : 구청장
 - 당연직위원(3명) : 부구청장, 도시국장, 지적과장
 - 위촉직위원(3명)
- 3) 위원회운영(안제4조)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.
- 4) 회의소집(안제5조) : 개최 3일전에 의안첨부 각위원에게 통지.
- 5) 의사(안제6조)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.
- 6) 간사등(안제7조) : 간사는 지정계장이 되며,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중 간사가 정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- 7) 회의록(안제8조) : 회의록을 비치 보관한다.
- 8) 여비등(안제10조) :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3. 관계법령

○ 부동산 중개업법 제 37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내지 제3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·조정한다.

제 3 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당연직위원 : 부구청장, 도시국장, 지적과장
2. 위촉위원 :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명 이내
 - 가.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
 - 나. 판사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 - 다.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 연장자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위원회 운영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의소집 등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의사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조 (간사 등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정계장이 되며,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중 간사가 정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 8 조 (회의록)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심의사항
4. 진행사항
5. 위원 발언요지
6. 심의결과
7. 기타 중요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회의의 공표)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0 조 (위원여비 등) 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